

(버스, 택시) 운전자격증(휴대용)

성명:

생년월일:

자격증번호:

자격취득일:

사진

(3.5cm×4.5cm)

위의 사람은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제3항에 따라 자격이 있음을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

한국교통안전공단

직인

85mm×54mm[백상지 150g/㎡]

(뒤 쪽)

운수종사자 유의사항

-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에 따라 자격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은 지체 없이 본 자격증을 관할관청에 반납해야 합니다.
- 「도로교통법」 위반으로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본 자격증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관할 관청에 문의 바랍니다.